

	<h2>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h2>	제정일자	1997. 9. 1
		개정일자	2017. 9. 5
		페이지	1-15

제1조(적용범위) 학교법인 충청학원 및 충청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2. 2. 1)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 징계위원회는 학교의 장 징계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 직원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개정 2011. 5. 1)

② 학교의 장 징계위원회는 총장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9. 2. 1)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2. 10. 22)

④ 직원징계위원회는 대학교 및 법인의 직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1. 5. 1, 2012. 2. 1)

⑤ 상위 직위자와 하위 직위자가 관련된 징계 사건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 상위 직위에 있는 자의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⑥ 징계의 사유가 경미(주의조치, 경고 등)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의 장 재량에 의하여 처리 할 수 있다.(개정 2011. 5. 1)

⑦ 학교의 장이 임용권자일 경우에는 당연히 학교의 장이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징계위원회 설치) ① 학교의 장 징계위원회는 학교법인 충청학원에 둔다.

② 사립학교법 제62조 및 본 법인 정관에 의거 교원 및 직원의 징계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와 직원징계위원회를 법인에 둔다.(개정 2011. 5. 1)

제4조(용어)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 5. 1)

1. “교직원”이라 하면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2. “교원”이라 하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을 말한다.

3. “직원”이라 하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및 법인 직원을 말한다.

제5조(징계의 사유)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행한다.

1. 사립학교법, 교육관계법령, 정관에 위반하여 교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교직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6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으로 구분한다.

제7조(징계의 효력) ①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교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②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④ 불문(경고)은 징계의결서의 의결 주문난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라고 기재한다.

제8조(구성) ① 학교의 장 징계위원회는 학교법인 충청학원 이사 9인으로 구성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와 직원징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개정 2011. 5. 1, 2016.09.01)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학교법인 이사 및 외부인사 중에서, 직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 5. 1, 2016. 09.01)

④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인사의 위원의 임면은 사립학교법 제62조 및 제62조의 2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6.09.01.)

제9조(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위원회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

③ 전항의 경우에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제척사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 또는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2조(위원의 기피등) ① 징계대상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면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임시위원의 임명은 이사회 의결없이 임면권자가 행하고 당해 징계 절차가 완료되면 당연히 해임된다.(신설 2011. 5. 1)

제13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교직원의 임면권자는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제5조의 각호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진상조사를 행한 후 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해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1)

② 징계의결 요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 또는 서류로서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1)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2.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
3. 징계사유와 징계요구서의 의견
4. 징계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

5. 징계혐의자의 이력서

6. 근무성적표

③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징계의결 요구 등에 적용한다.
(신설2014.11.20)

제14조(징계의결기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11. 5. 1)

제15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개정 2011. 5. 1, 2012. 1. 1)

②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징계사유의 시효에 적용한다.
(신설 2014.11.20)

제16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 불명, 또는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징계 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하기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2회 이상의 출석 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해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4항의 출석통지는 신문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신문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11. 5. 1)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여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1. 5. 1)

제18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징계의 양정) ①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 5. 1)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 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 5. 1)

1. 법인 또는 학교 발전에 공헌한 공적

2. 모범 교직원으로 선발된 공적

3. 기타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제 4조 1항 각 호의 징계감경 사유에 준하는 공적

③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의결) ① 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서의 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임면권자가 제1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면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징계요구자에게 회송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1조(위원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2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면권자가 임명한다.

제23조(교원재심위원회) 본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의 재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제24조(직원의 재심위원회 설치) ① 본 법인 정관 제 85조의 규정에 의거 직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에 직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재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하되 교직원 또는 법인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직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재심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지 못한다.(개정 2011. 5. 1, 2017. 9. 5)

제24조의 2(재심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직무) 재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조선설 2011. 5. 1)

제25조(재심의 청구 등) ① 직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그 사본 1부와 처분 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 통지서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재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속학교명, 직위,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2. 피청구인(처분권자)
3.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5. 재심청구의 취지
6. 재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③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재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못한다. 그러나 제 1 항의 기간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경과 후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④ 재심청구인이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재심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기일지정통지) ① 재심위원회는 재심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출석통지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의 취지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 5. 1)

제27조(위원의 제척·기피) 재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는 징계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심사의 범위) 재심위원회는 징계 기타 재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못한다.

제29조(재심결정) ①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재심위원회는 심사를 완료하고 주문과 사유를 기재한 재심결정서를 임면권자와 청구인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1)

③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④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개정 2011. 5. 1)

⑤ 직원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⑥ 재심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합의로 결정한다.

제30조(결정서 작성) 재심위원회는 재심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표시

2. 결정 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제31조(징계처분의 경정) 임면권자는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내용으로 한 재심의결 결정서를 받은 때에는 이미 행한 징계처분을 지체없이 경정하여야 한다.

제32조(비밀누설의 금지) 징계사건의 심리에 참여한 자는 누구든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적용범위) 재심위원회 규정은 본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직원 및 법인 직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1. 5. 1)

제34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제35조(위임사항) 본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징계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1. (경과조치) 본 규정에 개정에 있어 “징계위원회규정”,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정” 은 2001년 5월 11일자로 폐기한다.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개정에 따라 이 규정 시행당시의 교원징계위원회와 직원징계 위원회 및 직원징계재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016년 8월31일 종료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수 령 증

학교법인 충청학원 교직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1 부

20

상기 출석통지서를 정히 수령함.

수 령 인 (인)

학교법인 충청학원 교직원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징 계 의 결 서

	① 소 속	② 직 위(급)	③ 성 명																																			
징계협의를자 인적사항																																						
④ 의 결 주 문																																						
⑤ 이 유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bottom: 10px;"> 년 월 일 </div>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35%;">교직원징계위원회</td> <td style="width: 15%;">위</td> <td style="width: 15%;">원</td> <td style="width: 15%;">장</td> <td style="width: 20%;">(인)</td> </tr> <tr> <td></td> <td>위</td> <td></td> <td>원</td> <td>(인)</td> </tr> </table>				교직원징계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교직원징계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① 소 속	② 직 명	③ 성 명
④ 주 문		
⑤ 이 유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p>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년 월 일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처분권자(처분체청권자) (인)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귀 하</p>		

징 계 재 심 의 결 서

	① 소 속	② 직 명	③ 성 명
재심청구자 인적 사항			
④ 재심의결 결조문			
⑤ 이 유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bottom: 10px;">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35%;"> <p>충청학원 직원징계재심위원회</p> </div> <div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 <p>위 원 장</p> <p>위 원</p> <p>위 원</p> <p>위 원</p> <p>위 원</p> </div> <div style="width: 25%; text-align: right;"> <p>(인)</p> <p>(인)</p> <p>(인)</p> <p>(인)</p> <p>(인)</p> </div> </div>			